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0일, 이달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회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가.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성폭력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현행법 제8조 및 제36조제1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기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봄.

나. 국가기관등의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국가기관등의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6조제2항제4호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누설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시에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를 상담소 등의 장이나 종사자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50조 제2항제1호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및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제3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관등의 직원 등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0조는 제2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의 장)에 위치하는 조문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및 그 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30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5조의4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한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고,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4제2항 전단 중 “사건처리기간”을 “사건 처리기간”으로, “행위자”를 “성폭력행위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30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36조제2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30조”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생략) <u><신설></u>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u>성폭력 사건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u><신설></u>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u>사건 처리</u> <u>기간</u> ----- ----- ----- ----- <u>성폭력</u> <u>행위자</u> ----- ----- ----- ----- ----- ----- <u>아니 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②· ③ (생 략)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생 략) <신 설>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	<u>사람, 그 밖에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 한 사람은 해당 사 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 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보고하 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는 제외한 다.</u> ④· ⑤ (개정안 제3 항 및 제4항과 같 음)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현행과 같 음) <삭 제>
---	--	--

	<u>건을 처리하거나,</u> <u>그 처리 내용을 보</u> <u>고받은 사람, 그 밖</u> <u>에 사건처리 과정</u> <u>에 참여한 사람은</u> <u>해당 사건처리 과</u> <u>정에서 알게 된 비</u> <u>밀을 피해자의 의</u> <u>사에 반하여 누설</u> <u>하여서는 아니 된</u> <u>다. 다만, 사건 처</u> <u>리와 관련된 내용</u> <u>을 국가기관등의</u> <u>장에게 보고하거나</u> <u>관계 기관의 요청</u> <u>에 따라 필요한 정</u> <u>보를 제공하는 경</u> <u>우는 제외한다.</u>	
제36조(벌칙) ① (생략)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제1항----- ----- -----	4. 제30조----- ----- -----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한다.</u>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생 략) <u><신 설></u>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u>
<u><신 설></u>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